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24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이광희 · 김 윤 · 이주희
박지원 · 정진욱 · 이상식
조정식 · 송재봉 · 서영석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의2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동소화장치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계인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2.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3.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설치·관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가능성, 연소 확산 속도 및 인명피해 위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 까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의2(자동소화장치의 설치)</u></p> <p>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계인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1. <u>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u></p> <p>2. <u>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u></p> <p>3. <u>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p> <p>② <u>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설치·관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